

---

第61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文化教育委員會會議錄 第1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

日時 1993年3月19日(金) 午後2時  
場所 文化教育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立藝術團體設置條例案
  2. 風納土城復元要求에關한請願의件
- 

審査된案件

1. 風納土城復元要求에關한請願의件(金鍾雄議員 紹介) ... 1面
  2. 서울特別市立藝術團體設置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8面
- 

(12時 15分 開議)

○委員長 權會榮;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61回 서울特別市議會 臨時會 1次 文化教育委員會를 開議합니다.

(議事棒 3打)

---

1. 風納土城復元要求에關한請願의件(金鍾雄議員 紹介)

○委員長 權會榮; 議事日程을 바꿔서 먼저 風納土城에 대한 請願書를 먼저 處理하겠습니다. 그러면 2項인데 1項으로 바꿔 上程합니다. 風納土城 請願에 대한 것을, 우선 請願에

대한 小委員會에서 먼저 하도록 절차를 하겠는데 먼저 그 風納土城에 대한 請願에 대한 件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그러면 小委員會에서 먼저 小委員會 그 동안의 活動에 대한 報告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小委員長, 報告해 주세요.

○李鍾學 委員; 小委員長님을 대신하여 本人이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1992年 10月 17日 서울특별시 松坡區 風納洞 83番地 49號 이낙기로부터 金鍾雄 議員의 紹介로 提出되어 同年 10月 20日 當委員會에 回附된 風納土城復元要求請願에 대한 小委員會의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  
(報告)

風納土城復元要求請願에 대한 審査結果報告

(뒤에 실음)

.....  
本 件 意見書 採擇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提出理由, 1970年 10月 26日 史蹟 제11호인 風納土城에 대한 文化財保護區域으로 指定된 이래 總 2,680m 중 1977年度에 154m를 지정 해제하고 1978年度에 446m 復元하였을 뿐, 殘餘 2,080m가 繼續 放置되어 土地所有者들의 財產權 侵害에 따른 民願이 상존해 왔으므로 國家와 地方自治團體가 이미 計劃된 바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復元事業을 施行함으로써 文化遺産을 後孫에게 길이 물려주고 地方財政을 健全하게 運用토록 執行부에 促求하기 위함이었습니다.

主文, 史蹟 제11호인 風納土城과 關聯하여 1970년 10월 26일 文化財保護區域으로 指定된 이래 154m는 指定 解除하고 446m를 復元하였을 뿐 殘餘 2,080m가 未復元狀態로 계

속 放置되어 土地所有者들의 財産權 侵害에 따른 民願이 상존해 온 狀況에서 當 議會에 請願書가 提出된 바, 1993년 이후 단계적으로 推進하기로 이미 決定된 計劃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請願趣旨를 적극 受容하여 復元事業을 推進하되 風納土城이 國家 史蹟임을 감안하여 國庫支援을 받을 수 있는 가능한 措置를 취하여 地方財政 負擔을 줄이고 民願을 解消시킴이 妥當할 것으로 判斷됨.

자세한 內容은 書面報告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우리 小委員會가 5회에 달하는 懇談會와 2회에 걸친 會議를 하여 深度 있고 폭넓게 審査하여 報告한 대로 意見書를 採擇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小委員會 審査報告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資料提供에 努力한 執行部, 關係公務員 專門 教授님들에게 그리고 同 委員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權會榮; 그러면 그 동안의 風納土城 請願에 대해서 小委員會에서 深度 있고 아주 여러 가지 努力을 많이 하고 세밀하게 調査해서 아주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 小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것에 대해서 原案대로 通過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면 小委員會에서 審査 報告한 것을 原案대로 通過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풍납토성복원요구에관한청원에대한의견서안

(뒤에 실음)

.....  
○孫馥 委員; 孫馥 委員입니다. 서울시立大學校 醫科大學設置 建議案이 서울특별시의회에 接受되어 本 常任委員會에서 本 委員이 다음과 같이 建議案에 대한 動議를 하는 바입니다.

全國民 醫療保險制度가 實施된 지도 數年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醫療惠澤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國民階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民間醫療 서비스는 자유방임 주의적 供給源則이 適用되고 商業性에 치우쳐서 기초적 醫療需要의 충족보다 收支 打算에 얽매이는 경향이 있고 이 때문에 産業災害, 環境公害, 交通事故 등의 治療와 특히 재활서비스 분야는 醫療, 서비스 供給이 절대적으로 不足한 狀態이므로 公共醫療 서비스는 商業的인 서비스 분야가 소홀히 하는 收益性이 적은 分野에도 特화하여 補完的인 機能을 遂行 하여야 합니다.

數年前 消費者團體가 發表한 바대로 醫師 1人當 1日 診療患者數가 150명을 넘고 患者 1인당 平均 診療時間이 3分 52秒에 머무르는 등 醫療서비스의 質的 次元에 심각한 問題가 있음은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社會 一角에서는 우리 醫療人力이 충분하므로 더 이상 醫科大學 新設은 抑制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77년과 1990년 사이에 醫師免許登錄者는 約 80%의 增加에 머물렀지만 診療를 받은 患者數는 무려 350%가 增加하여 醫療人力의 供給이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과잉이라고 보기는 힘든 현실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7개의 市立病院과 22개의 保健所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理由에서 市民들의 의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理由가 醫療人力需給이 이루어지지 않아 質

的 低下는 물론 慢性的인 赤字에 과행적 運營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問題는 이를 利用하는 中産層 以下 庶民層인 우리 市民이 直接 被害를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동안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서울시와 서울시立大學校에서는 1989년부터 現在까지 每年 繼續 教育部에 設置認可申請을 하였으나 아직 認可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人間生命工學 및 健康科學 分野에 관한 學問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先進社會 進入時에 대 두될 市民의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증대에 副應하고 서울시 립대가 市民을 위한 市民의 大學으로 발전되고 綜合大學으로서의 大學發展基盤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시立大學校에 醫科大學 設立은 반드시 必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민에게 醫療受惠 範圍를 넓히고 良質의 醫療서비스를 提供하기 위해서, 市立病院 및 保健所 運營의 活性化와 經營 正常化를 위해서, 또한 서울시 現存 市立病院과 保健所가 醫科大學과 연계되지 못한 關係로 자체 研究機能이 없어서 醫療關係者의 資質向上의 機會가 缺如되고 醫療陣의 기피현상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質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醫科大學 設立이 必要한 것입니다.

市立病院이나 保健所의 1차적 機能은 高급환자를 많이 유치하여 많은 黑字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서울대학병원이나 다른 大型 綜合病院과 競爭 關係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補完關係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既存의 綜合病院 문턱이 너무 높아서 醫療惠澤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서울시민에게 受診의 機會를 넓히는 것이 市立病院과 保健所의 1차적 機能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에 醫科大學이 開設되면 여기서 輩出되는 人力 40명 全員은 市立病院과 保健

所에서 흡수하도록 入學 당시부터 制度的인 裝置를 할 것입니다. 즉, 入學條件, 登錄金 徵收條件, 卒業後 採用條件, 服務年限 및 報酬規定 등을 事前에 確定하여 修鍊過程 履修 後 專門醫 資格을 取得하면 一定期間 동안 市立病院과 서울시 保健所에 勤務토록 條件附 入學과 卒業을 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1994學年度에 醫科大學이 開設된다고 하더라도, 醫豫科 2년, 本科 4년, 軍服務 3년, 인턴과 레지던트 5년 등 約 14년의 시일이 지나 2007년에 가서야 專門醫가 輩出되므로 이제 醫大設置는 지체할 수 없는 時急性을 가진 課題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保社部가 發表한 資料에 따르면 1992년말 현재 國內 1인당 人口數는 1,204명으로 미국 434명, 프랑스 384명, 캐나다 454명, 일본 613명에 비해 2배 내지 3배로 높아 結果적으로 醫師數의 不足과 의료서비스의 質 低下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事情을 감안하여 서울시립대학교에 醫科大學을 設立할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민의 代表이신 市議會議員 여러분들의 積極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本 建議文 첨부서와 같이 우리 常任委員會에서 이것을 建議하여서 本會議에 상정코자 動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會榮; 이제 서울시립대학교 醫科大學 設立案에 대해서 孫馥 委員께서 動議案을 上程했습니다. 動議案에 대해서 再請이 계십니까?

(「再請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시면 孫馥 委員의 動議上程에 대해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그러면 점심시간이 지났으므로 2時까지 停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2時 32分 會議中止)

(14時 13分 繼續開議)

○委員長 權會榮;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棒 3打)

먼저 이번에 또 文化觀光局長도 새로 赴任하셨고, 또 世宗文化會館長님도 赴任하셨습니다. 두 분의 인사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3월 18일자 命에 의해서 文化觀光局長으로 下命받은 孫長鎬입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委員長님 이하 여러 委員님의 뜻을 받들어서 열과 성을 다해서 文化觀光局 業務에 최선의 努力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在職하는 기간 동안 여러 委員님들의 많은 崇高와 指導鞭撻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權會榮; 世宗文化會館長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인사하세요.

○世宗文化會館長 金振昱; 3월 18일자로 命에 의해서 世宗文化會館長으로 赴任한 金振昱입니다. 저는 文化觀光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릅니다. 존경하옵는 委員長님을 비롯해서 名 委員님들의 앞으로 指導鞭撻을 잘 받아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範圍 內에서 우리 千萬市民을 잘 管理해서 우리 서울시가 어느 地域보다도 그런 측면의 運營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의 努力으로 경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指導와 鞭

撻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個人的으로나 人間的으로도 자주 隘路事項이 있을 때는 委員님들하고 事前相議도 좀 드리고 建議도 올리고 이런 方向으로 해서 民主的인 行政이 될 수 있도록 제가 最善의 努力을 다할까 합니다. 앞으로 많은 指導와 鞭撻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權會榮; 감사합니다.

---

## 2. 서울特別市立藝術團體設置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4時 15分)

○委員長 權會榮; 議事日程 제1항 서울特別市立藝術團體設置條例案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本 件에 關하여서는 제60회 臨時會 第1次 文化敎育委員會에서 執行部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들은 후 深度있게 審査한 끝에 專門家인 藝術團體長들의 意見을 청취하고 더욱 深度있게 審査하기 위하여 保留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藝術團體長들의 意見을 청취하였습니다. 藝術團體長들의 意見과 委員님들의 質疑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精一 委員; 張精一 委員입니다. 提出해 주신 서울特別市立藝術團體設置條例案 中 제4조를 보면 團員의 委囑條項에 團員은 공개전형을 거쳐 서울特別市長이 委囑한다. 다만 國內外에서 活動한 實績 등 특별히 必要하다고 인정되는 者는 特別銓衡에 의하여 委囑할 수 있다 하는 條項에 대해 가지고 本委員은 團員은 公開銓衡을 거쳐 團長의 推薦 또는 再請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의 委囑한다라고 變更을 함이 가하다고



생각을 하는 데 執行部側의 意見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제6조 委員會의 設置條項이 있습니다. 그 제1항에 藝術團體의 效率的인 運營을 위하여 名 藝術團體에 委員會를 둘 수 있으며, 委員은 市長이 委囑하고 그 構成과 運營 等に 關해서는 規則으로 定한다는 그 제6조에 대해 가지고 사실 藝術團體는 나름대로 獨創性和 그 나름대로 자기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委員會를.....이 條文을 보면 잘못하면 9個의 委員會도 둘 수 있을 정도의 矛盾點이 있는 條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本委員은 藝術團體의 獨創性을 유지를 해 주고 또 그 사람들의 發展的인 意見을 整理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委員會는 必要가 없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또 만에 하나 꼭 必要해서 둔다 하더라도 複合的으로 審議하여 가지고 運營하기 위해서 한 개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執行部側의 答辯을 要求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會榮; 一問一答 式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文化觀光局長님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張精一 委員님에 대한 答辯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의 公開銓衡을 거쳐, 이런 文句를 團長의 推薦을 받아서.....

○張精一 委員; 아닙니다. 公開銓衡을 거쳐 가지고 團長의 推薦에 의해서 市長이 任命한다. 그런 것입니다.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네, 그 뜻은 충분히 理解를 하겠습니다. 採用의 公正性을 確保하기 위해서 또 專門性을 確保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理解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원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公開銓衡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이 應募를 하게 됩니다. 응모를 해서 엄격한 審査에 대해서 거

치기 때문에 이것을 또 여기에서 團長の 推薦을 따로 받는다는 것은 조금 問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團長の 推薦은 어떤 형식이 될는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한 基準을 구하기가 매우 힘든 問題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公開銓衡에 의해서 公正性을 確保한 연후에 合格된 사람을 또 團長이 별도로 여기서 推薦하게 되면 團長の 主觀이 혹은 名 藝術分野의 아집이 介入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성을 지금 늦출 수 없는 立場에 있습니다. 그 다음 제6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同感을 합니다. 9個 團體를 일일이 다한다는 것도 번거롭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좋으신 指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선 여기에 제6조제1항에 名 藝術團體에 委員會를 둘 수 있으며 하는 條目에 대해서 이 '각'자를 빼고 나면 이 한 委員會만 둘 수도 있고 결국 여러 개 될 수도 있는 問題가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각'자를 빼고 그냥 委員會를 둔다는 것으로 두고 일단 運營上 우선 1個 委員會, 總括적인 委員會를 만들어서 運營을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각'자를 삭제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같은 立場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張精一 委員; 제4조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公開銓衡을 거친다는 이야기는 말씀하신 대로 專門性을 가진 많은 人員이 우리 團體에 參與하기 위해 가지고 申請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有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물론 採用이 됩니다. 그런데 이 藝術이라는 이러한 特殊性을 비취봤을 때 어디에다가 基準을 두겠는가, 상당히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지금 앞으로는 9個 團體가 되겠습니다만, 그 團體를 責任지는 團長の 사실상

그 方針에 의해 가지고 또 거기 그분의 藝術的인 主眼點에 맞춰 가지고 運營된다고 보기 때문에 公開銓衡은 거치되 유사하게 과연 이런 경우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最終적으로 선발했는데 정말 2名, 3名이 우열을 가리기 힘들만큼 다 有能하다. 이렇게 했을 때 한 名을 뽑는다고 보면 결국 그 사람을 一次的으로 責任지고 運營 管理하는 사람은 團長 아납니까? 그랬을 때 最終的인 그러한 추천권은 團長한테 주는 것이 그 團體의 運營을 위해서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네.

○孫馥 委員; 그 答辯하시기 이전에 補充的으로 質疑하겠는데 答辯을 같이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公開銓衡을 할 때 公開銓衡 審査委員들이 있을 것 아납니까? 그 範圍를 같이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理解하기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보통 公開銓衡이라는 部分에 대해서 一般 公職者는 주로 學科試驗 爲主로 어떻게 採用이 되겠지만, 아마 이 藝術團體 名 會員의 採用이라는 것은 뭐랄까요, 學科試驗式으로 이렇게 採用은 안 될 것입니다. 아마 試驗方式에서 書類銓衡, 우선 그 사람의 經歷이라든가, 과거의 藝術團體 活動經歷을 評價하는 書類銓衡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實技分野에 대해서는 아마 公開를 여러 委員님을 모셔놓고 實技를 가지고 試驗을 치게 되겠는데 이 實技銓衡에서 우리 張 委員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實技銓衡은 委員이 우리 藝術團體의 長이 여기에 아마 銓衡委員으로 參與하실 겁니다. 參與하시게 될 겁니다, 結果的으로. 이렇게 되면 결국 實技試驗委員이 團體長이기 때문에 결국 團體長의 指揮統率에 意圖하는 바의 사람이 合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

니다.

○孫馥 委員; 아마, 參與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先例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네, 具體的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補充答辯을…….

○曹相彩 委員; 이 問題는 世宗文化會館 館長이 答辯한 것이 맞을텐데…….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그런데, 제가 조금만 答辯드리겠습니다. 過法の 例는 말이죠, 過法の 例는 우열이 가려지지 않았을 때 그 試驗委員에 團長이 계시기 때문에 査定委員會를 열어서 그 判定을 주도해 오셨답니다. 주도해 오셨기 때문에 큰 問題가 없습니다.

○張精一 委員; 바로 그겁니다. 團長이 參與를 해 가지고 그분의 意識을 충분히 받아들인다고 봤을 때 公開銓衡도 거치고 最終的인 것은 어차피 銓衡委員들이 있으니까 最終的인 것은 그래도 團長이라면 長 아십니까? 그분들한테 士氣振作 次元에서라도 그러한 但書を 하나 딱 붙여주면 얼마나 더 모양새가 있겠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네, 그 뜻은 원래 案은 條例案은 대강의 事案을 정하고 具體的인 事案은 規則에 보통 細部的인 事案을 정하게 됐으니까 우리 張 委員님이 말씀하신 바 그대로 反映될 수 있도록 檢討를 하겠습니다.

○劉起鍾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 張 委員님이 말씀하신 그 다음 部分에서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요. 다만 國內外에서 活動한 實績 등 특별히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者는 特別銓衡에

의하여 委囑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特別銓衡으로 委囑할 때로 審査委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그렇죠.

○劉起鍾 委員;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그 團員들을 募集하는 과정에서 特別銓衡으로 지금 團員을 募集한 것이 몇 분이나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비중을 몇 %나 차지하고 계십니까?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常識적으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條에 公開銓衡을 原則으로 하고 特別銓衡을 例外로 두게 되어 있는데 우선 公開全形 原則으로 했으면 했지 왜 이런 特別銓衡의 소위 政治的 소지가 있는 特別銓衡制度를 왜 規定했나 하는 그런 의아심도 들기는 합니다만, 소위 藝術團體 會員들은 다른 一般 公職者와 달라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또 부득이 해서 外國에서 아주 有名한 人士가 오셨을 때 바로 우리가 스카웃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問題가 생겼을 때 有能한 분이 오셨을 때 이것을 採用하기 위한 편의적 規定이지 이것을 가지고 原則을 버리고 예외를 運營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劉起鍾 委員; 아니, 저, 제가.....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아마 從前的 例를 봐서 每年 한 4·5名 정도가 안 될까요.

○劉起鍾 委員; 제가 드리는 말씀은 國內外에서 活動한 사람이거든. 外國이면 外國. 뭐, 특별히 그러면 아주 基準을 뒤가지고 무슨 償에서 특별동아콩쿠르라든가 이런 特別한 部分의 國內活動이라든가, 이런 規定이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여기 지금 藝術團體의 團員들은 國內外에서 活動한 實績 等했기 때문에 全體 藝術團體團員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거

든. 그러니까 外國에서 活動을 했다든가, 아니면 國內라도 특별히 아주 비중이 있는 그런 데서 특별히 大賞을 받았다든가 이러한 基準을 뒤 쥐야지 이것은 너무 포괄적인 그러한 意味가 들어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네, 제4조 問題나 제6조 問題나 좀더 具體性 있고, 좀더 公正하고, 좀더 發展的인 그런 뜻으로 理解를 하겠습니까만,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特別銓衡이라는 制度自體가 특히 藝術分野에 많이 適用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藝術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자존심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公開銓衡으로는 잘 應募를 하지 않고 오히려 使用하는 側에서 억지로 모셔와야 하는 立場에 많이 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셔오는 立場에서 하다보니 그런 길을 터놓기 위해서 이 特別銓衡이라는 節次를 두었습니다. 또 一般 公開募集하면 정말 우리가 모시고 싶은 사람을 못 모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實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가피한 경우를 豫想해서 規定이기 때문에 앞으로 委員님들 말씀하신 것을 좀더 細部的인 必要가 있다면 規則에서 基準을 定하는 方向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張精一 委員; 제4조는 우리 文化教育委員會에서 염려하는 바를 局長께서 충분히 檢討를 하셔서 가지고 추후 施行規則을 새로 또 制定해야 되는데요. 그때 그러한 가장 엄정하고 유능한 團員들이 採用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를 하시기를 바라면서 제4조는 좋습니다, 좋고요. 제6조는 '각'자를 削除하고 아니면 藝術團體의 效率的인 運營을 위하여 世宗文化會館內에 藝術團體의 支援을 위하여 總括委員會를 둔다든가

하는 것으로 一部 修正을 해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보세요.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그러면 總括委員會를 둔다면 1個의 委員會로 限定한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야 되겠습니까?

○張精一 委員; 네, 1個의 委員會로.....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일단 '각'자만 削除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劉起鍾 委員; '각'자를 빼면 意味가 없는 것이지 더욱 包括的으로 많은 委員會를 둘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일단, '각'자..... 그러면 張精一委員 님 質問에 대해서 다시 제가 整理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6조의 이 案에서 '각'자를 削除를 하면 지금 現在 世宗文化會館長 傘下의 8개 團體를 포함한 여기 委員會 1개 와 또 市立劇團, 市長傘下의 市立劇團에 대한 委員會 1개 최소한의 委員會를 가지고 運營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劉起鍾 委員; 劉起鍾 委員입니다. 처음에는 8개의 藝術團體를 運營하기 위해서 委員會를 두는데 그 委員은 館長이 委囑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規則에 그렇게 되어 있죠. 條例로 制定하려고 그러는데. 館長이 委囑을 하던 것을 지금은 市長이 委囑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趣旨가 劇團을 創團을 하면서 創團을 運營하는 委員은 市長이 委囑하고 나머지 8개 團體를 運營하는 委員은 館長이 委囑하는 것으로 그대로 남겨 두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서울世宗文化會館長은 전혀 權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한다고 하면 委員은 館長이 推薦하여 市長이 委囑한다라고 해야지, 館長은 있으나

마나 한데 館長의 權限이 縮小되기 때문에 이것은 고쳐야 됩니다. 안됩니다. 이것은.

○孫馥 委員; 그것은 제7조에서 되어 있습니다. 市長의 權限中에서 館長한테 委任한다고.....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지금 제7조 權限의 委任條項中에서 지금 世宗文化會館長에게 市長의 權限을 거의 전면적으로 지금 委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劇團만.....

○劉起鍾 委員; 劇團만 빠지는 것입니까?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에서 이 9개 委員會를 모두 두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니고 委員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委員會는 최소한으로 이렇게 줄이도록 하고 그 줄이는 範圍는 우선 館長이 委任받은 事項에서 委員會를 하나 만들고 우선 劇團에 대해서 市長傘下의 委員會를 하나 만드는 方向으로 이렇게 運營하도록 하겠습니다.

○張精一 委員;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일단 '각'자는 지우고 施行規則에서 그것을 補完을 나중에 하십시오.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알겠습니다.

○劉起鍾 委員; 제7조는 그것이 아닙니다. 제7조는 團員에 대한 委囑이거든요. 團員에 대한 委囑 等 運營에 關한 權限이 거든. 그렇기 때문에 제7조에서 지금 제6조에 있는 委員會 委囑에 대한 權限이 本委員이 보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9개 團體에 대한 名 藝術團體委員會를 둔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 여기 運營에 關한 權限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委員委囑 問題도 權限이 주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委員會를 하나로 한다고 했을 때는



전혀 委員會에 대한 委囑權限은 館長에게 부여되지 않게끔 되어 있다고 本委員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 제6조에서 委員에 대한 委囑問題는 確實하게 하고 넘어 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 權限의 委任條項에 여기서 團員의 委囑이라는 用語를 제일 앞장세운 것은 藝術團에 關한 問題에서는 團員이 제일 重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일 앞장 세웠다는 이야기이지, 그 다음에 뒤에 運營이라는 것은 運營에 대한 전반적인 事項이기 때문에 그 運營 속에는 이 委員會도 포함됐다고 이렇게 解釋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委員會라는 것이 특별한 議決機關도 아니고 運營을 잘하기 위한 하나의 諮問的인 機構입니다. 그래서 이 運營에 關한 權限, 이 속에 委員會 設置하는 것도 포함되었다 이렇게 解釋이 됩니다.

○劉起鍾 委員; 그러니까 여기 제6조에 委員은 館長의 推薦에 의하여 市長이 委囑한다, 이렇게.....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그렇게 되면 一般劇團은 또 館長이 推薦을 해야 된다는 結論이 나오죠. 法解釋上 또 그런 問題가 생기죠.

○劉起鍾 委員; 그러면 委員會를 2개를 뒤야 됩니다. 委員會 劇團을 劇團에 대한 委員會하고 그 다음에 8개 團體에 대한 委員會하고 여기에다 딱 그렇게 明示를 해 줘야 돼요. 2개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劇團에 대한 委員은 市長이 委囑을 하고 그 다음에 8개 團體에 대한 委員은 館長이 委囑한다. 이렇게 明示를 확실하게 해 줘야 될 것입니다.

○朴善童 委員; 朴善童 委員입니다. 市立劇團은 既存 團體에

비해 큰 長點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既存 團體가 一過性 公演에 그쳐 市民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던 藝術公演과는 달리 市立劇團은 藝術性和 商業性이 조화된 大衆演劇을 基準으로 하기 때문에 觀客動員이 아니라 觀客의 參與를 유도할 수 있는 작품을 選定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市立劇團이 바람직하고 극대화된 成果를 갖기 위해서는 既存 團體가 갖추지 못한 점 즉, 확대된 自律性, 獨立採算制의 可能性, 館長體制의 運營脫皮에 대한 改善的인 內容을 明文化하여 그 結果를 既存 團體의 問題點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制度的 運營規則에 상세히 있겠지만 既存의 團體보다 특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必要하다는 생각에서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市立劇團이 既存 團體에 비해서 여러 가지 特殊性이 있고 또 앞으로 重要的 團體라는 것은 전적으로 저희들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運營問題들이 設置根據 條例案에까지 運營方法까지 다 設置하는 것은 立法技術上 좀 問題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우선 이 條例案에 대해서는 대충 設置根據를 마련하고 우리 委員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部分에 대해서는 별도 規則에도 상세히 정해서 그것을 잘 運營되는 方向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 劇團이라는 것은 우리가 또 최초로 市長 直屬下에 設置해 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問題點이 많이 도출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段階에서 무엇이 問題點이라고 딱 이렇게 定하는 것보다는 規則이나 이런 데에서 定하고 우리 運營의 妙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고 앞으로 만약에 여기 問題가 있으면 앞으로 우리 委員님 여러분께서 많이 指導를 해주시고 또 충고를 해 주시면 그 改善點에 대해서는

성실히 받들어서 이렇게 措置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善童 委員; 알겠습니다.

○李鍾學 委員; 李鍾學 委員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제7조에 보면 이 事項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解釋이 분분합니다. 지금. 그러면 權限의 委任, 이 條例에 의한 市長의 權限 中 劇團을 제외한 모든 權限을 館長에게 委任한다와 똑같은 얘기입니까? 劇團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團體는 館長에게 다 委任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여기 市長의 權限 中 이라고 나와 있어요. 劇團만 市長 直屬이고 모든 權限을 다 館長한테 주는 것이냐, 아니면 市長의 權限 中에서 團員委囑과 運營에 대해서만 주는 것이냐.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아마 劇團을 제외한 部分에 대해서는 전부 委囑한다,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團員委囑 및 運營에 關한 모든 權限이라는 것은 결국 그 團體에 대한 모든 權限입니다.

○李鍾學 委員; 똑같은 얘기입니까? 團長의 任命이나 이런 事項도 다 任命이 되는 것입니까? 이 條例를 가지고 한번 읽고 나면 理解가 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解釋을 하고 있던 말이에요, 지금. 그냥 한번 읽으면 理解가 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든다, 그렇게 解釋을 할 수 있다, 있다 가 아니라 한다. 이렇게 해야 條例가 通過하든지 안 하든지 하지 나중에 만약에 아까 말씀대로 자꾸만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6조에 '각'자만 빼고 그냥 通過를 시킨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 만들 수 있고 올해 하나 뒀다가, 그 다음에 그냥 다 뒤도 되고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要求하는가를 빨리 理解를 도리어 하셔서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묻는 것이에요. 제7조 같은

경우 분명히 저번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條例에 의한 市長의 權限中에서 劇團을 제외한 모든 權限을 館長에게 委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실체는.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答辯을 드렸습니다. 이 條例 제7조 條文에 의하면 이 조례에 의하 이하 文獻에서 지금 劇團만 제외한 모든 團體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委囑 等 運營에 關한 權限을 世宗文化會館長에게 委任한다 이렇게 明文規定으로 봐서 틀림없이 모든 權限을 委任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鍾學 委員;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쉽게 해 놓았으면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團員委囑과 運營에 대한 權限만 委任을 한다고 했으니 團長은 서울시장의 또 任命을 해도 아무 瑕疵가 없는 것이예요, 이 條例上으로 보아서. 이상입니다.

○曹相彩 委員; 曹相彩 委員입니다. 長時間에 지금 깊은 討論을 했는데 整備를 할 時間이 되었습니다. 市長傘下에 둘 演劇團體委員會와 소위 世宗文化會館에서 管掌한 8개 團體 이 두 團體를 分類해서 委員會를 둘 것이냐, 아니면 통합해서 委員會를 둘 것이냐 하는 問題가 지금 舉論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文化觀光局長 立場에서는 지금 8개 團體와 市傘下에 둘 演劇團體에 名名 委員會를 두고 싶다, 이 말씀이죠?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네, 그렇습니다.

○曹相彩 委員; 이렇게 했을 때 제7조에 該當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質問을 했는데 該當이 됩니까? 안 됩니까?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8개 委員會는 전부 委囑되고 제7조에서 전부 權限이 世宗文化會館에게 委任되는 것으로 이렇게 理解를 하고 있습니다.

○曹相彩 委員; 그것이 틀림없죠?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네.

○曹相彩 委員; 그러면 그것을 믿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執行部の 要望事項은 委員會를 둘로 분류해 주십사 하는 內容이죠?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네, 그렇습니다.

○曹相彩 委員; 네,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委員長님, 이 問題를 우리가 委員들 참고된 意見を 더 듣고 가부 結論을 빨리 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張精一 委員; 제6조를 本委員의 생각은 이렇게 고쳤으면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6조제1항 藝術團體의 效率的인 運營을 위하여 2個의 委員會를 둘 수 있으며 그러면 지금 局長께서 이야기하신 것하고 일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이것이 결국 結論은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인데 꼭 執行部를 못미더워서 2개로 꼭 運營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말이 없습시다만 일단 執行部 局長이 나와서 일단 여기에 발언한 것은 會議錄에도 수록이 되고 하는 事項이고 하기 때문에 믿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張精一 委員; 그러면 2개를 하는 것으로 答辯하시는 것으로 하고 '각'자를 削除하는 것으로.....

○劉起鍾 委員; 2개의 委員會를 둘 수 있으며 市立劇團의 委員은 서울시장의 委囑을 하고 8개 團體의 委員은 館長이 委囑을 한다. 이런 條件으로 2개 委員會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 우리 條例制定에 이렇게 明示를 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規則에서 規定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規則으로 規定을 해 주시기를 꼭 바라면서 規則에 이것이

삽入이 되었나 안 됐나를 우리 委員會에서 報告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우리 委員님들이 이 案에 同意를 하면 이렇게 修正動議하는 것을 提案하겠습니다.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孫馥 委員; 孫馥 委員입니다. 長時間 동안 同委員 여러분들께서 條例 條文 하나를 실제 우리 市民에 맞는 그런 條例가 될 수 있도록 深度있게 檢討를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執行部側에서도 이 條例案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 長期的인 안목으로 봐서 좀더 發展的이고 效率的인 市政을 위해서 다 制定하셨으리라고 믿고 여러 가지 質疑와 答辯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제6조의 效率的인 運營을 위하여 名 藝術團體에 委員會를 둘 수 있으며 이것은 사실 둘 수 있으며 한다는 그 뜻은 뒤도 되고 안 뒤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執行部の 어떤 앞으로 市政을 效率的으로 運營하기 위한 하나의 方便으로도 이렇게 條例案을 法令 하나의 文句인데 이것은 충분히 잘 理解를 하시고 執行을 하시고 名 藝術團體에서 委員會를 둘 수 있으며 하는 그 條項의 '각'자를 削除하고 이 條例案을 通過시킬 것을 動議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會榮; 지금 孫馥 委員의 動議에 再請 있습니까?

○曹相彩 委員; 再請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孫馥 委員님 動議案에 대해서 제가 補充해서 說明을 드릴 게요. 지금 8개 團體하고 서울시 傘下에 둔 演劇團體의 委員會를 둘로 둘 수 있다 하는 立場과 또 우리가 理解를 충분히 했는데 단, 이 原案 속에서 두 委員會를 둔다 하는 事項만 플러스해서 이 案을 通過시키자, 處理하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2개 委員會라느 말을 지금 빠트린 理由는 執行部の 융통

성 있는 委員會를 設置하는 그런 內容이다 이런 뜻입니다.

○委員長 朴會榮; 그럼 '각'을 두 개로만 고치는 겁니까?

○劉起鍾 委員; 아니, 규칙에서 '각'자만 빼고 規則에 넣어야죠, 규칙에.

具體的인 規則에. 條例는 이렇게 하고 規則에 2개의 委員會를 두되 劇團은 市長이 委囑하고 8개 團體委員은 우리 館長이 委囑한다, 이렇게 하죠.

○曹相彩 委員; 그런데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다르잖아요. 條例는 이렇게 해 놓고 規則에 다 거기다 넣으면 효과 면에서 상당히 問題가 있을 것이니까 좀 복잡하지만 할 때 確實히 해야 되니까. 이 內容에 대해서 2개 委員會를 둔다 하는 事項을 여기다 삽입하면 됩니다. 그 글자에다가.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이게, 設置根據인 條例案에서까지 무엇 무엇을 두라 하는 것은 立法技術上에도 問題가 되고 또 이렇게 못을 박았다가 앞으로 만약에 또 問題가 생겼으면 또 바뀌기도 무척 곤란하기 때문에 우선 아까 答辯드린 대로 우리 規則에 두 개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시다만, 여기에서 條例가 그렇게 規定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기에 證言과 비슷한 答辯을 한 사람이 따로 다르게 運營할 리는 없습니다. 믿어주시고, 可能하면 아까 정리된 대로 通過를 시켜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委員長 朴會榮; 그러면 지금 제6조에 대해서 孫馥 委員은 '각'자만 빼고 그대로 原案대로 通過시키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規則에서 먼저 2개 委員會를 둔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 '각'자만 빼고서 그냥 그대로 原案대로 通過시키는 것으로 動議가 왔어요. 再請 있어요?

(「再請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지금 제6조에 한해서 그 '각'자만 削除를 하고 나머지는 原案대로 通過시키는데 執行部側에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네.

○委員長 朴會榮; 네, 그러면 執行部側에서도 同意를 하시고, 委員님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네, 없으시면 그럼 제6조에서 그 '각'자만 削除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그대로 原案대로 通過하는 것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서울특별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안

(뒤에 실음)

.....  
○委員長 朴會榮; 그러면 오늘의 議事日程을 전부 마치고 散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5時 02分 散會)

---

○出席委員

權會榮 孫馥 曹相彩

劉起鍾 孫允準 李鍾學

張精一 趙貞順 朴善童

李載震



○專門委員

鄭永國

○出席公務員

文化觀光局長 孫長鎬

世宗文化會館長 金振昱